

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

남양주소방서의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4. 1. 23.

남 양 주 소 방 서



- 조사기간 : 2024. 1. 23.(화) ~ 2024. 2. 2.(금)
- 조사대상 : 총 3개소(세부내역 별첨)
- 조사인원 : 화재안전조사반
- 조사사유 :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조사
- 조사방법 : ☐ 종합조사, ☒ 부분조사
- 주요 조사내용

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5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
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
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
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1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1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
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
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
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▷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
- ▷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(<https://119.gg.go.kr>)에
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,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
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전화 :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☎ 031-570-0371~6

화재안전조사 대상

연번	대상	위치	비고
1	경춘선 평내호평역사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75	
2	호텔더메이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70	
3	골드관광호텔	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92번길 133	